

##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 II :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

김 용 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김 남 진\*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우 이 구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 《요 약》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개인적·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가칭)의 표준 모델 구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의 두 번째 기초연구 단계로,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30개 대학과 부서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177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기구 및 부서 운영에 있어 교내 협력체제와 고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에 차이가 많다. 둘째,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는 교수자에 대한 지원, 평가지원, 생활지원, 진로지원, 장학지원 등 전 영역에 걸친 지원의 정도가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들에 비해 미흡하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지원 실태, 지원센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국민은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에 의해 상급 학교로의 진학 및 학습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상 장애인의 진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175개(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제외) 4년제 대학과 148개 2-3년제 전문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은 장애인들의 진학

\* 교신저자(njkim@kaya.ac.kr)

및 학습 그리고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증가(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7)하고 있음에 반해, 이들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 지원 미비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은 그 간의 연구들(김동연, 1997; 김성애·박찬웅·이해균, 2003; 김헬레나, 2000; 양재신, 2000; 이옥경, 2003; 정정진, 2004; 조홍중·장수균, 2005;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을 통해 지적된 바이다. 이들 장애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부분 교수-학습지원과 관련(김성애 외, 2003; 김헬레나, 2000; 이옥경, 2003)된 것들로, 결국은 장애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김성애 외, 2003; 양재신, 2003;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요구 증가와 이들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 대학 당국의 준비 소홀이라는 불균형적 요소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3년부터 매 2년마다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지원 향상 정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영역 등 3개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데, 2006년 2월에 발표된 2005년도 평가 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5)에 의하면 2003년과 비교해서 장학금 지원과 평가방법의 제공에 있어서는 향상이 있었으나, 학습지원은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개선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학습지원의 문제점과 관련해 정정진(2007)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중심 지원체제로의 변환, 장애학생의 대학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공, 개별화지원프로그램의 강화, 장애학생 지원 조직의 재구조화, 지역협력체 지원의 다양화 등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가 현지방문평가 방식을 통해 직접적 관찰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전문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전문대학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2007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80개 대학(교)들 중 전문대학은 9개교에 불과하다는 보고(교육인적자원부, 2007)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은 대학선택의 폭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입학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 5월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852호)은 이상에서 제기된 수업 연한에 따른 학교 간 차이는 물론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의 수에 상관없이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

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0호)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통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그리고 10명 미만이 재학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두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욱·김남진·곽정란(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개인의 요구를 비롯하여 법률적 제안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 내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대학이 장애 대학생의 개인적 요구 및 법률적 제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가칭)의 표준 모델 구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일부에 해당된다.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모델의 구안 및 제시를 위해서는 앞서 진행된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검토(김용욱 외, 2008)와 함께 각 대학 규모 및 수업 연한 그리고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수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는 물론 향후 가능한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표준 모델을 구안하고 제시함에 있어서는 현실의 반영과 함께 드러난 현재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이상적인 수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실태를 파악, 이를 비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지원실태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파악하였다. 즉 장애 대학생들 지원함에 있어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관련 부서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실태를 조사, 비교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을 새롭게 구안함에 있어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대학의 기구 혹은 부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둘째,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 평가, 생활, 진로, 장학 등의 영역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관학교 및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과 같이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제외한 2007년 현재 4년제 대학은 201개교(일반대학 175개교(11개 분교 제외),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4개교, 기술대학 1개교)이며, 전문대학은 148개교에 이른다. 이에 4년제 대학 201개교와 전문대학 148개교 등 총 349개교를 조사 대상으로 하되, 분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본교와 분교 모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360부(4년제 212부, 전문대 148부)가 배부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들 중 4년제 대학의 112개교(분교 포함)와 2-3년제 대학 95개교 등 207부(57.5%)가 회수되었다. 이와 같은 회수율은 4년제 대학의 52.8%, 전문대학의 64.1%에 해당되는 수치로, 연구목적에 맞춰 각 대학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은 30개교(14.5%) 그리고 독립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177개교(85.5%)였다. 자료로 분석된 각 대학(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조사 대상 대학의 배경변인별 특성

단위 : 개교(%)

배경변인	구분	독립기구 설치 대학			독립기구 미설치 대학			전체
		4년제	2-3년제	계	4년제	2-3년제	계	
지역	수도권	14(48.3)	1(100.0)	15(50.0)	33(39.8)	30(31.9)	63(35.6)	78(37.7)
	충청	3(10.3)	-	3(10.0)	15(18.1)	7(7.4)	22(12.4)	25(12.1)
	강원	1(3.4)	-	1(3.3)	3(3.6)	7(7.4)	10(5.6)	11(5.3)
	영남	6(20.7)	-	6(20.0)	20(24.1)	28(29.8)	48(27.1)	54(26.1)
	호남	5(17.2)	-	5(16.7)	10(12.0)	20(21.3)	30(16.9)	35(16.9)
	제주	-	-	-	2(2.4)	2(2.1)	4(2.3)	4(1.9)
설립주체	국·공립	5(17.2)	1(100.0)	6(20.0)	18(21.7)	4(4.3)	22(12.4)	28(13.5)
	사립	24(82.8)	-	24(80.0)	65(78.3)	90(95.7)	155(87.6)	179(86.5)

배경변인	구분	독립기구 설치 대학			독립기구 미설치 대학			전체
		4년제	2-3년제	계	4년제	2-3년제	계	
입학정원	2,500명 이상	14(48.3)	-	14(46.7)	27(32.5)	25(26.6)	52(29.4)	66(31.9)
	2,500명 미만-1,250명 이상	11(37.9)	-	11(36.7)	27(32.5)	45(47.9)	72(40.7)	83(40.1)
	1,250명 미만	4(13.8)	1(100.0)	5(16.7)	28(33.7)	24(25.5)	52(29.4)	57(27.5)
	결측	-	-	-	1(1.2)	-	1(0.6)	1(0.5)
특례입학 실시유무	실시	22(75.9)	1(100.0)	23(76.7)	32(38.6)	6(6.4)	38(21.5)	61(29.5)
	미실시	7(24.1)	-	7(23.3)	50(60.2)	88(93.6)	138(78.0)	145(70.0)
	결측	-	-	-	1(1.2)	-	1(0.6)	1(0.5)
전체		29(96.7)	1(3.3)	30(100.0)	83(46.9)	94(53.1)	177(100.0)	207(100.0)

## 2. 연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현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돼 있는 대학용과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용과 같이 두 가지로 각각 제작하였으며, 수업 연한에 따른 구분은 두지 않았다.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6)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관련 항목을 토대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당위성이 인정된 사항들 및 현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사전 조사·분석한 결과 결정하였다. 질문지 작성 후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의 관련 담당자 3인과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의 관련 담당자 3인을 대상으로 연구도구가 갖는 타당도 검증 실시하였으며, 이후 지적된 바를 질문지 수정·보완에 적극 반영하였다. 수정·보완된 질문지는 다시 관련자들에게 보내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과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의 설치 유무를 우선적으로 구분하도록 돼있는 질문지는 독립기구가 설치된 학교용은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외에 29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독립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은 배경변인을 묻는 5문항 외에 33문항으로 작성돼 있다. 각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적 기구가 있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적 기구가 없는 대학
배경변인	학교 소재지, 설립주체, 특례입학, 장애대학생 현황, 독립적인 조직 (기구) 명칭과 규정	학교 소재지, 설립주체, 특례입 학, 장애대학생 현황, 장애대학 생 지원 부서,
기구(조직) 운영 일반	1, 2, 3, 27, 29	1, 2, 3, 4, 5, 6, 30, 31, 33
장애대학생 개인정보 관리	4, 5, 6	7, 8, 9
협력체제	7, 8, 9, 10, 28	10, 11, 12, 13, 32
교수-학습지원	11, 12, 13, 14	14, 15, 16, 17
평가지원	15, 16, 17	18, 19, 20
생활지원	18, 19, 20	21, 22, 23
진로지원	21, 22, 23	24, 25, 26
장학지원	24, 25, 26	27, 28, 29
전 체	29문항(배경변인 5문항 제외)	33문항(배경변인 5문항 제외)

### 3. 연구절차

조사 및 연구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8개월 동안으로 <표 II-3>은 연구절차와 이에 소요된 기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3> 연구절차 및 기간

절 차	2007.9-10	2007.11	2007.12	2008.01-02	2008.03	2008.04
연구설계	■					
설문지 작성 및 예비검사	■	■				
설문지 수정 및 재검사, 최종확정		■	■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		
설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

작성된 질문지를 배부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었는데, 연구자 개인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질문지를 각 대학에 배부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협조 정도는 물론, 자료의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으로 본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수락하여 전국의 해당 대학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요하는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 회신을 요청하였다. 각 대학으로부터 회신된 질문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가 수합하여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과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 간 비교를 위해 공통 질문인 23문항에 한해 SPSS 1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구 혹은 부서의 현재 운영 실태 및 계획은 독립기구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배경변인별 빈도 그리고 교차분석을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교수-학습지원 및 평가지원 등과 같은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세부 실태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구(부서)의 운영 실태

##### 1) 기구(부서) 운영 일반

<표 III-1>은 현재 센터에서 혹은 학교 차원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3순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지원(n=16, 53.3%)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은 장학지원(n=67, 43.5%)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최대 중점 업무 외에 센터의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활 및 진로지원, 시설·설비의 개보수 및 확충이 다음이었으며, 센터가 설치돼 있는 대학의 경우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n=8, 26.7%)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중요시되고 있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더불어 향후 동일한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센터가 설치돼 있는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n=7, 23.3%)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생활 및 진로지원(n=6, 20.0%)의 순이었다.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은 장학지원 사업(n=45, 26.3%)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었으며, 다음은 시설·설비를 개보수하거나 확충(n=30, 17.5%)할 계획을 갖고 있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① 개교	16	18	34	3	15	18	2	13	15
%	53.3	11.7	18.5	10.0	10.0	10.0	6.7	8.9	8.5
② 개교	1	4	5	-	6	6	2	7	9
%	3.3	2.6	2.7	-	4.0	3.3	6.7	4.8	5.1
③ 개교	3	7	10	6	8	14	8	11	19
%	10.0	4.5	5.4	20.0	5.3	7.8	26.7	7.5	10.8
④ 개교	1	-	1	1	2	3	2	10	12
%	3.3	-	0.5	3.3	1.3	1.7	6.7	6.8	6.8
⑤ 개교	-	12	12	1	8	9	1	5	6
%	-	7.8	6.5	3.3	5.3	5.0	3.3	3.4	3.4
⑥ 개교	4	67	71	5	27	32	3	19	22
%	13.3	43.5	38.6	16.7	18.0	17.8	10.0	13.0	12.5
⑦ 개교	-	-	-	-	1	1	2	8	10
%	-	-	-	-	0.7	0.6	6.7	5.5	5.7
⑧ 개교	3	17	20	7	40	47	5	33	38
%	10.0	11.0	10.9	23.3	26.7	26.1	16.7	22.6	21.6
⑨ 개교	2	28	30	7	40	47	3	32	35
%	6.7	18.2	16.3	23.3	26.7	26.1	10.0	21.9	19.9
⑩ 개교	-	1	1	-	3	3	2	8	10
%	-	0.6	0.5	-	2.0	1.7	6.7	5.5	5.7
전체 개교	30	154	184	30	150	180	30	146	17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①교수-학습지원(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등) ②센터 내 인력 확충  
 ③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④타 기관과의 교류 증진 ⑤효율적인 조직 개편  
 ⑥장학지원 ⑦평가지원 ⑧생활 및 진로지원 ⑨시설·설비의 개보수 및 확충 ⑩기타

2) 협력체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내의 많은 기관 혹은 부서간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센터 혹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내 기관(부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III-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학생복지과, 입학관리과 등 본부의 학생지원관련 부서와의 협력체제가 가장 많이 구축돼 있었으며, 시설과 등을 포함하는 본부의 시설관리 부서가 다음이었다. 이어



서 장애학생이 소속돼 있는 단과 대학이나 학과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결과 역시 동일했다.

<표 III-2>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현재 협력체제가 구축된 교내 기관, 부서(중복응답)  
단위 : 개교(%)

내 용	독립기구		전 체
	유	무	
본부 학생지원관련 부서	27(90.0)	148(87.1)	175(87.5)
본부 행정 부서	16(53.3)	47(27.6)	63(31.5)
본부 시설관리 부서	22(73.3)	72(42.4)	94(47.0)
교수-학습지원센터	9(30.0)	10(5.9)	19(9.5)
평생교육원	-	3(1.8)	3(1.5)
관련 연구소	-	5(2.9)	5(2.5)
취업준비실	9(30.0)	25(14.7)	34(17.0)
보건진료소, 부속 병원	3(10.0)	10(5.9)	13(6.5)
장애학생 소속 단과 대학 혹은 학과	16(53.3)	69(40.6)	85(42.5)
기타	6(20.0)	17(10.0)	23(11.5)
전 체	30(15.0)	170(85.0)	200(100.0)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교내 기관(부서)을 3순위까지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3>와 같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반응은 동일하였다.

즉 학생복지과, 입학관리과 등의 본부 학생지원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시설과 등의 본부 시설관리 부서의 순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학생 소속 단과 대학 혹은 학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III-3>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협력 체제가 필요한 교내 기관, 부서

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①	개교	17	124	141	5	27	32	4	6	10
	%	58.6	72.1	70.1	17.2	16.1	16.2	14.3	3.7	5.2
②	개교	-	2	2	3	26	29	4	21	25
	%	-	1.2	1.0	10.3	15.5	14.7	14.3	12.8	13.0
③	개교	2	12	14	15	51	66	3	42	45
	%	6.9	7.0	7.0	51.7	30.4	33.5	10.7	25.6	23.4

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④	개교 %	5 17.2	6 3.5	11 5.5	2 6.9	18 10.7	20 10.2	3 10.7	19 11.6	22 11.5
⑤	개교 %	-	1 0.6	1 0.5	-	-	-	-	1 0.6	1 0.5
⑥	개교 %	-	-	-	-	2 1.2	2 1.0	-	1 0.6	1 0.5
⑦	개교 %	-	-	-	1 3.4	7 4.2	8 4.1	7 25.0	18 11.0	25 13.0
⑧	개교 %	-	2 1.2	2 1.0	-	2 1.2	2 1.0	1 3.6	7 4.3	8 4.2
⑨	개교 %	3 10.3	25 14.5	28 13.9	3 10.3	33 19.6	36 18.3	6 21.4	46 28.0	52 27.1
⑩	개교 %	2 6.9	-	2 1.0	-	2 1.2	2 1.0	-	3 1.8	3 1.6
전체	개교 %	29 100.0	172 100.0	201 100.0	29 100.0	168 100.0	197 100.0	28 100.0	164 100.0	192 100.0

①본부 학생지원 관련 부서 ②본부 행정 부서 ③본부 시설관리 부서 ④교수-학습지원센터  
 ⑤평생교육원 ⑥관련 연구소 ⑦취업준비실 ⑧보건진료소 혹은 부속 병원 ⑨장애학생 소속 단과 대학 혹은 학과 ⑩기타

협력체제가 구축된 학교 외부 기관을 파악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같은 독립된 기관의 유무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 학교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중복응답)

단위 : 개교(%)

내 용	독립기구		전체
	유	무	
사회복지관	8(27.6)	27(15.6)	35(17.3)
자원봉사기관	7(24.1)	23(13.3)	30(14.9)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3(10.3)	4(2.3)	7(3.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고용관련 기관	16(55.2)	26(15.0)	42(20.8)
의료기관	4(13.8)	6(3.5)	10(5.0)
각종 산업체	2(6.9)	-	2(1.0)
타 대학 센터	6(20.7)	6(3.5)	12(5.9)
기타	1(3.4)	4(2.3)	5(2.5)
없음	8(27.6)	115(66.5)	123(60.9)
전 체	29(14.4)	173(85.6)	202(100.0)

즉 <표 III-4>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 기관이 있는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같은 고용관련 기관(n=16, 55.2%)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n=8, 27.6%)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답변과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n=8, 27.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설치돼 있는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답변이 66.5%(n=11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관(n=27, 15.6%), 고용관련 기관(n=26,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에서의 협력체제를 살펴본데 이어 <표 III-5>는 “센터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학교 외부 기관은 어디입니까?(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학교 외부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숫자로 표시해 주세요.”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의 관계자들은 고용관련 기관(n=11, 36.7%), 자원봉사기관(n=12, 40.0%)의 순으로 답했으며,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의 담당자들 역시 고용관련 기관(n=60, 35.7%), 자원봉사기관(n=47, 28.1%)의 순이라고 답해 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학교 외부 기관

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사회복지관	개교	6	45	51	2	23	25	8	24	32
	%	20.0	26.8	25.8	6.7	13.8	12.7	26.7	14.6	16.5
자원봉사기관	개교	3	39	42	12	47	59	2	36	38
	%	10.0	23.2	21.2	40.0	28.1	29.9	6.7	22.0	19.6
특수학교(급)	개교	4	11	15	-	13	13	-	17	17
	%	13.3	6.5	7.6	-	7.8	6.6	-	10.4	8.8
고용관련기관	개교	11	60	71	7	43	50	6	39	45
	%	36.7	35.7	35.9	23.3	25.7	25.4	20.0	23.8	23.2
의료기관	개교	2	8	10	2	16	18	3	20	23
	%	6.7	4.8	5.1	6.7	9.6	9.1	10.0	12.2	11.9
각종 산업체	개교	2	2	4	3	20	23	5	16	21
	%	6.7	1.2	2.0	10.0	12.0	11.7	16.7	9.8	10.8
타대학센터	개교	2	3	5	3	5	8	5	12	17
	%	6.7	1.8	2.5	10.0	3.0	4.1	16.7	7.3	8.8
기타	개교	-	-	-	1	-	1	1	-	1
	%	-	-	-	3.3	-	0.5	3.3	-	0.5
전 체	개교	30	168	198	30	167	197	30	164	1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6>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는 “귀 대학(교) 센터의 현재 사정 혹은 계획에 비취볼 때” 그리고 독립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은 “귀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현재 귀 대학(교)의 사정 혹은 계획에 비취볼 때”란 조건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사항들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각 대학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부모, 일반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n=21, 70.0%),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n=19, 63.3%), ‘전담직원 배치’(n=18, 60.0%)의 순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 독립기구가 없이 전담 부서에 의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은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n=101, 62.7%), ‘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n=83, 51.6%), ‘전담직원 배치’(n=82, 50.9%)의 순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표 III-6> 향후 실현 가능한 협력체제 구축(중복응답)

단위 : 개교(%)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유	무	
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	8(26.7)	69(42.9)	77(40.3)
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	7(23.3)	83(51.6)	90(47.1)
교내 평생교육원과의 협조체제 구축	3(10.0)	42(26.1)	45(23.6)
장애인고용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19(63.3)	101(62.7)	120(62.8)
특수학교(급)과의 협력체제 구축	6(20.0)	34(21.1)	40(20.9)
부모, 일반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프로그램 운영	21(70.0)	65(40.4)	86(45.0)
보조공학기기 확충	17(56.7)	54(33.5)	71(37.2)
센터의 총장(학장) 직할 지원·부속기구로의 조직 개편	7(23.3)	23(14.3)	30(15.7)
전담직원배치	18(60.0)	82(50.9)	100(52.4)
전체	30(15.7)	161(84.3)	191(100.0)

<표 III-7>은 독립기구를 아직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독립기구를 아직 설치·운영하고 있는 못한 대학에 대해서 “귀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전담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입니다.”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이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3순위까지 숫자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적인 기구가 있는 대학은 ‘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n=9, 30.0%)을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답했으며, ‘전담직원의 배치’(n=6, 20.0%)가 다음으로 요구되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역시 센터의 역량 강

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 중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없는 대학의 경우는 ‘전담직원의 배치’(n=47, 29.2%)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반응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n=35, 22.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III-7> 독립 기구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독립기구유무		전체	독립기구유무		전체	
	유	무		유	무		유	무		
①	개교	9	44	53	4	18	22	3	22	25
	%	30.0	27.3	27.7	13.3	11.4	11.7	10.0	14.0	13.4
②	개교	2	16	18	4	23	27	3	18	21
	%	6.7	9.9	9.4	13.3	14.6	14.4	10.0	11.5	11.2
③	개교	0	3	3	3	4	7	-	5	5
	%	0.0	1.9	1.6	10.0	2.5	3.7	-	3.2	2.7
④	개교	4	20	24	4	35	39	8	35	43
	%	13.3	12.4	12.6	13.3	22.2	20.7	26.7	22.3	23.0
⑤	개교	-	3	3	2	6	8	2	5	7
	%	-	1.9	1.6	6.7	3.8	4.3	6.7	3.2	3.7
⑥	개교	3	7	10	3	19	22	6	25	31
	%	10.0	4.3	5.2	10.0	12.0	11.7	20.0	15.9	16.6
⑦	개교	3	8	11	3	14	17	5	13	18
	%	10.0	5.0	5.8	10.0	8.9	9.0	16.7	8.3	9.6
⑧	개교	3	12	15	1	20	21	1	7	8
	%	10.0	7.5	7.9	3.3	12.7	11.2	3.3	4.5	4.3
⑨	개교	4	47	51	6	19	25	2	27	29
	%	13.3	29.2	26.7	20.0	12.0	13.3	6.7	17.2	15.5
⑩	개교	2	1	3	-	-	-	-	-	-
	%	6.7	0.6	1.6	-	-	-	-	-	-
전체	개교	30	161	191	30	158	188	30	157	18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①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    ②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
- ③교내 평생교육원과의 협조체제 구축
- ④장애인고용관련 기관(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 ⑤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의 협력체제 구축
- ⑥부모, 일반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프로그램 운영
- ⑦보조공학기기 확충    ⑧센터의 총장(초급대학의 경우, 학장) 직할 지원·부속기구로의 조직 개편
- ⑨전담직원 배치        ⑩기타

## 2. 장애학생 지원 세부 실태

### 1) 교수-학습지원

많은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교수하는데 필요한 교수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자 지원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36.9%(n=75)였으며, 다음은 교수자에게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43%(n=21.2%)로 다음이었다(<표 III-8> 참조).

그러나 독립기구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교수자에게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만 제공(n=8, 26.7%)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교수방법 컨설팅까지도 제공(n=7, 23.3%)한다는 대학과 교수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n=7, 23.3%)는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교수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전체의 39.3%(n=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교수자에게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만 제공한다는 반응이 20.2%(n=35)였다. 그리고 교수자에게 수강 장애학생 명단만 제공한다는 경우도 17.3%(n=30)였다. 이와 같은 내용별 빈도에 대한  $\chi^2$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4.737, p < .05$ ).

<표 III-8> 교수자에 대한 지원 범위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chi^2$
		유	무			
교수자에게	개교	3	30	33	5	14.737*
수강 장애학생 명단만 제공	%	10.0	17.3	16.3		
교수자에게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만 제공	개교	8	35	43		
	%	26.7	20.2	21.2		
장애학생 교수자를 위한 교수방법 컨설팅만 제공	개교	3	2	5		
	%	10.0	1.2	2.5		
수강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교수방법 컨설팅 제공	개교	7	19	26		
	%	23.3	11.0	12.8		
교수자 지원 없음	개교	7	68	75		
	%	23.3	39.3	36.9		
기타	개교	2	19	21		
	%	6.7	11.0	10.3		
전 체	개교	30	173	203		
	%	100.0	100.0	100.0		

p < .05

학습자 지원의 범위에 대한 집단간 반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

데, 학습의 주체이면서 지원의 당사자인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재심사한 후에 제공(n=61, 30.2%)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27.7%(n=56)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의 형태와 관련하여, 내용별 빈도에 대한  $\chi^2$ 검정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은 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재심사(평가) 후 제공하는 형태(n=77, 39.7)가 가장 많았다. 기타(n=56, 29.4%)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이어 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센터 혹은 관련 부서가 일괄 제공하는 형태(n=50, 25.8%)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을 규정에 의하여 일괄 지원한다는 경우는 전체의 5.2%(n=10)에 불과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교수매체 및 보조기기 등과 같은 장애영역에 맞는 학습지원의 부족과 수화통역사 및 대필자 등을 지원하는 장애영역에 맞는 지원인력의 부족(n=53, 27.2%)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기구의 유무에 따른 반응의 정도를 살펴보면,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장애영역에 맞는 인력지원의 부족(n=11, 36.7%)을 그리고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장애영역에 맞는 학습지원 기구의 부족(n=43, 26.1%)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간 반응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평가지원

“평가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34.5%(n=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점역 및 한소네, 수화통역, 노트북 등의 적절한 편의조치와 함께 평가형태의 수정까지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25.6%(n=52)로 다음이었다.

집단간 반응 정도에 있어서는 .01 유의도 수준( $\chi^2=18.04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은 적절한 편의조치의 제공 및 평가형태의 수정을 동시에 실시(n=13, 43.3%)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학생에 맞는 편의조치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23.3%(n=7)로 다음이었다. 반면에 독립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은 평가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38.2%(n=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적절한 편의조치와 평가형태의 수정을 통한 지원(n=39, 22.5%)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지원의 범위

내 용	개교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적절한 편의 조치 제공만 (점역, 한소네, 수화통역, 노트북 등)	개교 %	7 23.3	27 15.6	34 16.7	6	18.040**
평가형태만	개교 %	1 3.3	1 0.6	2 1.0		
성적 기준만 조정	개교 %	1 3.3	6 3.5	7 3.4		
적절한 편의조치+평가 형태	개교 %	13 43.3	39 22.5	52 25.6		
적절한 편의조치+평가형태+ 성적기준 조정까지	개교 %	4 13.3	10 5.8	14 6.9		
지원하지 않음	개교 %	4 13.3	66 38.2	70 34.5		
기타	개교 %	0 0.0	24 13.9	24 11.8		
전 체	개교 %	30 100.0	173 100.0	203 100.0		

p < .01

<표 III-10>은 각각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지원의 형태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에서의 평가지원 형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반응의 차이는 .01 유의도 수준( $\chi^2=17.35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체적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n=72, 35.5%)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나,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의 경우는 센터와 담당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n=10, 33.3%)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부서에 의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38.2%(n=66)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표 III-10>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지원의 형태

내 용	개교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센터(관련 부서)와 담당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개교 %	10 33.3	23 13.3	33 16.3		
학생과 담당 교수와의 협의를 접수하여 지원	개교 %	5 16.7	56 32.4	61 30.0		



<표 III-10>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지원의 형태(계속)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규정에 의해 일괄 지원	개교	6	10	16	4	17.351**
	%	20.0	5.8	7.9		
지원하지 않음	개교	6	66	72		
	%	20.0	38.2	35.5		
기타	개교	3	18	21		
	%	10.0	10.4	10.3		
전 체		개교	30	173	203	
		%	100.0	100.0	100.0	

p < .01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지원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관계자들은 ‘평가기준의 불명확성’(n=76, 39.4)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관련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역시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평가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독립기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지원 인력의 부족’을 장애학생의 평가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의 차이는 .001 유의도 수준( $\chi^2=19.928$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평가지원의 문제점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담당 교수들의 비협조	개교	3	0	3	3	19.928***
	%	10.7	0.0	1.6		
지원 인력의 부족	개교	10	46	56		
	%	35.7	27.9	29.0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개교	7	69	76		
	%	25.0	41.8	39.4		
기타	개교	8	50	58		
	%	28.6	30.3	30.1		
전 체		개교	28	165	193	
		%	100.0	100.0	100.0	

p < .001

### 3) 생활지원

<표 III-12>는 대학에서 제공하고 생활지원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절차 및 정보, 편의시설 그리고 활동보조도우미까지 제공’(n=14, 46.7%)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활동보조도우미만 제공(n=6, 20.0%)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32.4%(n=56)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도우미만 제공(n=37, 21.4%)하는 경우가 다음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지원의 범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001 유의도 수준( $\chi^2=23.01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I-12>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원의 범위

내 용	개교 %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chi^2$
		유	무			
절차 및 정보까지만 제공	6.7	2	22	24	5	23.013***
절차 및 정보, 편의시설까지 제공	13.3	4	11	15		
활동보조도우미만 제공	20.0	6	37	43		
절차 및 정보, 편의시설, 활동보조도우미까지 제공	46.7	14	25	39		
지원하지 않음	6.7	2	56	58		
기타	6.7	2	22	24		
전 체	100.0	30	173	203		

p < .001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일차적으로는 독립기구에서 그리고 더욱 심도 있는 지원은 학교의 관련 기관에서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독립기구에서 통합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많았다. 반면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생활지원 자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장애학생 지원 관련 부서에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었다(<표 III-13> 참조). 이와 같이 생활지원 형태에 대한 집단간 반응의 차이에 대한  $\chi^2$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936$ , p < .05).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소로는 재정부족(n=67, 34.7%)과 인력부족(n=62, 32.1%)이 지적되었다. 독립기구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독립기관이 있는 경우 재정부족이 1순위), 인력 부족과 재정 부족의 문제가 생활지원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13>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원의 형태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센터(관련 부서)에서 통합하여	개교	8	39	47	5	12.936*
	%	26.7	22.7	23.3		
생활지원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독립된 형태로	개교	7	24	31		
	%	23.3	14.0	15.3		
각기 독립된 형태로 지원, 결과만 센터(관련 부서)에서 통합 관리	개교	2	7	9		
	%	6.7	4.1	4.5		
일차적으로는 센터(관련 부서), 심도 있는 지원은 학교 관련 기관	개교	9	24	33		
	%	30.0	14.0	16.3		
지원하지 않음	개교	4	60	64		
	%	13.3	34.9	31.7		
기타	개교	0	18	18		
	%	0.0	10.5	8.9		
전 체	개교	30	172	202		
	%	100.0	100.0	100.0		

p < .05

4) 진로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로지원은 방법 및 진로 정보까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III-14>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방법 및 진로 정보의 제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원은 독립기구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로교육까지도 병행(n=6, 20.0)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다음이었으나,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30.0%(n=51)가 진로지원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진로지원에 대한 집단간 반응의 차이는 .05 유의도 수준( $\chi^2=16.20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I-14>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지원의 범위

내 용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방법 및 정보까지	개교	12	52	64		
	%	40.0	30.6	32.0		

<표 III-14>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지원의 범위(계속)

내 용	개교 %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방법 및 정보까지	12 40.0	52 30.6	64 32.0	6	16.206*	
방법, 정보, 진로교육까지	6 20.0	25 14.7	31 15.5			
방법, 정보, 진로교육, 직장체험 기회 제공	4 13.3	5 2.9	9 4.5			
방법, 정보, 진로교육,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 알선	2 6.7	17 10.0	19 9.5			
방법, 정보, 진로교육,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 알선, 직업평가	3 10.0	6 3.5	9 4.5			
지원하지 않음	3 10.0	51 30.0	54 27.0			
기타	0 0.0	14 8.2	14 7.0			
전 체	30 100.0	170 100.0	200 100.0			

p < .05

장애대학생에 대한 진로지원 형태는 대학 내 독립기구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지원의 형태

내 용	개교 %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X <sup>2</sup>
		유	무			
센터(관련 부서)에서 통합	6 20.0	31 18.2	37 18.5	5	19.112**	
진로지원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독립된 형태로	9 30.0	45 26.5	54 27.0			
각기 독립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되, 결과만 센터(관련 기관)서 통합 관리	1 3.3	10 5.9	11 5.5			
일차적으로 센터(관련 부서), 더욱 심도있는 절차는 학교 관련 기관서	9 30.0	11 6.5	20 10.0			
지원하지 않음	3 10.0	47 27.6	50 25.0			
기타	2 6.7	26 15.3	28 14.0			
전 체	30 100.0	170 100.0	200 100.0			

p < .01

즉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진로지원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독립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일차적으로는 센터와 같은 독립기구에서 그리고 더욱 심도 있는 절차는 학교의 관련 기관(n=9, 30.0%)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27.6%(n=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진로지원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독립된 형태(n=45, 26.5%)로 지원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은 진로지원의 형태에 대한 집단간 반응의 차이를  $\chi^2$ 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19.112, p < .01$ ).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센터 혹은 관련 부서내의 인력 부족인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됐는데, 독립기구의 유무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장학지원

신체적·인지적으로 학습에 제한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장애 대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장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n=45, 22.2%).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n=33, 16.3%)하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n=38, 22.0%)고 답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학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16> 장애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의 형태

내 용	개교	독립기구유무		전체	df	$\chi^2$
		유	무			
장학지원에 대해서는 일괄 학교 규정에 의함	개교 %	21 70.0	85 49.1	106 52.2	4	14.991**
학교 규정에 의해 지원하기는 하지만, 센터(관련 부서)가 추천권을 갖고 있음	개교 %	6 20.0	12 6.9	18 8.9		
학생의 신청에 의해 센터(관련 부서)가 독립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음	개교 %	1 3.3	19 11.0	20 9.9		
지원하지 않음	개교 %	2 6.7	34 19.7	36 17.7		
기타	개교 %	- -	23 13.3	23 11.3		
전 체	개교 %	30 100.0	173 100.0	203 100.0		

p < .01

그러나 각 대학에서 장애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형태에 있어서

는 .01 유의도 수준( $\chi^2=14.99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6>에 의하면 독립기구의 유무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이 일괄 학교 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학교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되, 센터가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는 경우도 20.0%(n=6) 수준이었다.

장애 대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재원의 부족(n=88, 44.7%)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n=51, 25.9%)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과 관련한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된 대학과 미설치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표준 모델을 구안하고 그 운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4년제 대학 112개교 그리고 2-3년제 대학 95개교를 대상으로 이들을 다시 독립기구가 설치된 30개교와 독립기구가 미설치된 177개교로 분류하여 실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독립기구의 설치·운영과는 관계없이 교내적으로는 본부의 학생지원 관련 부서 및 시설관리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고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은 현재 교수-학습지원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 대학생들의 교수-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고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독립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반면 독립적인 기구가 없는 대학은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학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대외 협력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향후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교수자에 대한 지원 범위, 평가지원 범위 및 형태 그리고 평가지원의 문제점, 생활지원 범위 및 형태, 진로지원 범위 및 형태, 장학지원 형태에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독립기구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간에는 차이가 있다.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교수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독립기구와 담당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편의조치의 제공 및 평가형태의 수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원인력의 부족은 적절한 평가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 해당된다. 생활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독립기구가 일차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는 지원은 학교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절차 및 정보, 편의시설, 활동보조도우미까지 제공하고 있다.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방법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진로교육까지 실시하는 대학이 있는데, 진로지원과 관련된 각각의 부서에서 독립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에 있어서의 특징으로는 일괄 학교 규정에 의하기는 하지만, 독립기구가 장학생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은 특성들에 비취볼 때 독립기구가 없는 대학은 많은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지원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교수자에 대한 지원, 평가지원, 생활지원, 진로지원, 장학지원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학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영역에 맞는 학습지원 기기의 부족,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관련 부서내 인력 부족, 장학금 재원 부족 등의 요인들이 이들 대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 장애영역에 맞는 학습지원 기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유·초중등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으로 서비스의 대상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에 이르는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중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4항의 내용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는 관련 부서내 인력 부족의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과 동시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대학간의 협력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학

습기기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평가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각 대학은 기본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시간의 연장, 평가 공간의 확보, 평가 방법의 다양화 등과 관련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가와 관련한 규정은 학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게 하는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장애학생지원 실태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표준 모델 구안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각 영역에서 현재 지원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표준 모델을 구안함에 있어서는 각 대학 관계자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포된 이후, 각 대학은 법률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델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센터의 전체적인 틀을 계획하고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분석·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외의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내용을 모델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편람 개발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4-특-20.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보고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단.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김동연(1997).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에 따른 대학교육 지원 체계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58.
- 김성애·박찬웅·이혜균(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용욱·김남진·곽정란(2008).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 I : 실태 및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2), 181-202.
- 김천우(2000).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헬레나(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월호, 40-44.
- 이옥경(2003). 장애인 대학생지원의 현황과 발전 전망.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출범식 및 기념 워크숍 자료집, 25-36.
- 정정진(2004). 대학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9(3), 1-23.
- 정정진(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1), 109-132.
- 조홍중·강수균(2005).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실태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8(1), 3-20.
- 한국재활복지대학(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A Study on Service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I: A Survey on Current Service Status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Kim, Yong-Wook**

Daegu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Kim, Nam-Jin**

Kaya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Woo, Yi-Gu**

MEST Special Education Support Division

### <Abstract>

This study is the second one in sequence of studies regarding development of service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current supporting program, there were total 207 universities and colleges surveyed in this study. Researchers divided 207 universities with two groups such as 30 universities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s one group and 177 universities with only supporting office as the other group to te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 significant variables.

The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1) Many differences in plan and operation found between groups except the need of cooperation with external institution relating to employment, 2) universities with only supporting office were insufficient in supporting evaluation, living, employment, and scholarship than those services from universities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Key Words** : university(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tual conditions of support, service center

---

논문 접수: 2008. 8. 3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